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7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주호영 · 김성원 · 김소희
고동진 · 우재준 · 조지연
윤상현 · 신성범 · 김상훈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무궁화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집약된 한민족의 표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왔음. 현존하는 다수의 무궁화 관련 문헌 가운데 국가 공식 외교문서에 ‘근화향(槿花鄉: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신라의 기록에서 확인되는바 과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강역은 무궁화가 만발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이후에도 무궁화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근역(槿域)’ 등의 표현으로 쓰여 국가를 대표하였고, 영토는 물론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음. 여기에 백성들의 가옥을 중심으로 한 생활 공간에 존재했던 ‘무궁화 울타리’가 촌락과 가정을 둘러싼 경계이면서 공동체를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민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유대감이 강화되는 데 기여하였음.

한편,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는 겨레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획책에 저항하고 독립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국가 상징의 의미가 한층 고양되었음.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의 생물학적 특성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족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을 대변하면서 수많은 애국 시와 독립 노래에 등장하였고, 꽃잎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무궁화의 붉은 단심과 같이 민족 정신을 결집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화로 공인됨으로써 독립과 자주 국가의 염원이 실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 같은 역사성을 기반으로 나라 문장, 훈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이는 무궁화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응축한 핵심적인 상징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냄.

오늘날 무궁화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일관된 상징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에게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전승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국제 무대에서는 태극기, 애국가와 함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드러내는 문화 코드로 활용됨.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궁화 관련 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제8절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 등 5개 조문으로만 되어 있어 “연구개발보전, 산업교육 분야

등의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법 체계상 일반적인 산림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된 법률로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와 보급을 비롯한 선양사업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품격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궁화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궁화 보급·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및 무궁화의 품격을 제고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진흥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진흥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및 무궁화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무궁화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함(안 제8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이 소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적에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무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궁화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아.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품종보존원, 양묘시설 등 무궁화 기반시설을 확보·관리하고,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 자. 산림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13조).
- 차.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무궁화의 품격과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며,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진흥사업”이란 무궁화 보급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무궁화의 연구·개발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업

나. 무궁화의 재배기술 개발과 확산, 보급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업

다. 무궁화의 유전자원 보전 및 생태적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업

라. 무궁화를 활용한 문화진흥, 교육·홍보 및 국민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마. 제2호에 따른 무궁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무궁화산업”이란 무궁화 또는 무궁화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연구·개발·생산·가공·유통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체험·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육성 및 진흥과 무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애호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하여 심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심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심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궁화의 진흥 및 무궁화산업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무궁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진흥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3. 무궁화의 확대 보급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무궁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궁화의 보급·육성 및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 현황 및 무궁화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수립·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식재·분포 및 관리 현황
2. 무궁화 진흥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현황
3. 무궁화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선호도 현황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 정책의 수립·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무궁화의 날) ①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라꽃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실시,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무궁화의 식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에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무궁화를 식재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에 필요한 자문,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무궁화 보급 확대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권 주변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3. 무궁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무궁화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무궁화 품종의 보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무궁화 재배·관리 기술 향상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가 무궁화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연구기관·단체, 무궁화산업 종사자 등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무궁화 기반시설의 확충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안정적인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품종보존원, 종자공급시설, 양묘시설 등 무궁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무궁화 품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양묘시설(이하 “스마트양묘장”이라 한다)의 설치 등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 관련 스마트양묘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무궁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관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교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2. 해외 소재 무궁화 동산 등의 조성·관리 및 홍보
3. 무궁화 관련 국제행사 개최
4. 우수한 무궁화 품종 교류 및 종자 보전을 위한 연구 협력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궁화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2. 무궁화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3. 무궁화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4. 무궁화 양묘·보급
5. 스마트양묘장 등 기반시설 현대화에 관한 기술 지원
6. 무궁화 생산이력 정보 및 유통 관리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2항 각 호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무궁화의 연구·보급 또는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무궁화의 생산·육성 또는 유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방법,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과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무궁화진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을 삭제한다.